

검 토 보 고 서

안 건 명	부서명	페이지
1.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생활체육과	1

(2015. 3. 27)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은 모]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5년 3월 18일(수)
-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의안 회부일자

- 2015년 3월 20일(금)

4.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생활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검토보고]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 동(同) 조례안은 망원유수지 내 건립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체육센터」가 2015. 6월 말경에 준공됨에 따라 마포구민체육센터의 명칭과 위치 및 사용료 징수기준을 조례에서 정하고, 사용료는 조례에서 상한액과 하한액 범위만 정하고 규칙으로 위임하여 세부적인 사용료를 정하도록 하였으며,
- 또한 구립체육시설의 수탁자 선정기준 및 위탁취소사유 등을 명확히 하고 이해관계인이 해당 심사위원회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규정을 두어 공정한 선정심사 제도 확립 및 상위 법령에 근거한 구립체육시설의 감면대상과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향후 구민이 구립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임.

< 주요내용 >

- 가. 구립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 등을 정비(안 제3조 관련 별표 1)
 - 마포구민체육센터의 준공에 따라 명칭 및 위치 등을 신설
 - 기존 구립체육시설의 위치를 새주소로 변경
- 나. 구립체육시설의 사용료 정비(안 제8조 관련 별표 2 ~ 별표 4)
 - 조례에서 구립체육시설의 시설과 대상자별 사용료 범위를 규정하고, 규칙에서 사용료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
- 다. 상위 법령에 따라 구립체육시설의 감면기준 정비(안 제11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구립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대상과 감면비율을 정비

라. 구립체육시설의 수탁자 선정과 위탁의 취소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16조 및 제21조)

- 수탁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하되, 방법과 절차 등은 규칙에서 정함
- 규칙에 규정된 위탁의 취소기준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

마. 이해관계인이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하고 위원의 제척·회피·기피를 규정하여 위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부적절한 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

- 안 제17조2(위원의 제척·회피·기피) 규정 신설

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검토의견]

○ 동(同) 조례안은 새로 건립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체육센터」의 준공이후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하여 위·수탁 관련 조례, 마포구민체육센터의 명칭과 위치, 체육종목 및 시설과 대상자별 사용료 징수기준, 수탁자 선정기준 및 위탁 취소 사유와 시설 이용자의 감면대상과 비율 그리고 위탁 및 (재)계약 시 이해관계인의 해당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제척·회피·기피 등 향후 마포구민 체육센터 운영 시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관련 별표1에서는 구립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 등을 새로 신설하고, 기존 구립체육시설의 위치를 새주소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8조 관련 별표 2~별표 4 에서는 조례에서 구립체육시설의 시설과 대상자별 사용료 범위를 규정하고, 규칙에서 사용료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상위법규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구립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대상과 감면비율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구립체육시설의 수탁자 선정기준을 정하여 수탁자는 공개 모집으로 선정하되, 방법과 절차 등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21조에서는 규칙에 규정된 위탁의 취소기준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 하였으며,

안 제17조2에서는 선정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규정을 신설하여 선정심사 시 이해관계인이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하여 선정심사위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부적절한 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하였음.

- 동(同)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9조 및 「체육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에 저촉됨이 없고, 2015.2.12.~ 3.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절차상에 문제점은 없으며 그 동안 정비되지 않은 부정확한 용어 및 문구 등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음.
- 검토의견으로는 새로 건립되는 망원동 마포구민체육센터 내 신설 체육 종목인 헬스, 볼링장에 대한 사용료를 조례로 정하면서, 그 동안 적용해 왔던 염리 생활체육관, 와우산 배드민턴장 등 우리 구 구립체육센터 시설의 사용료를 타자치구와 비교 검토하여 우리 구 조례에서 구립체육시설의 시설과 대상자별 사용료 상한액과 하한액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규칙에서 세부적인 사용료를 정하도록 하였는바, 향후 규칙에서 세부적인 사용료 책정 시에는 물가 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정한 사용료 책정으로 많은 구민들이 구립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마포구민체육센터의 경우 2015년 6월말 준공으로 수탁자 선정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탁자 모집 공고 및 선정심사 기간과 선정 후 수탁자가

구민체육센터 관리 운영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담당부서에서는 준공 기간 내 구민체육센터가 완공되어 수탁자가 정상적으로 관리 운영 할 수 있도록 수시로 공사 진행사항을 관련부서와 확인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함은 물론 행정적인 법적인 절차에도 만전을 기하여 앞으로 구민들이 마포구립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임.

관 계 법 규

지방자치법(법률 제11690호)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90호)

제6조(생활체육시설)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